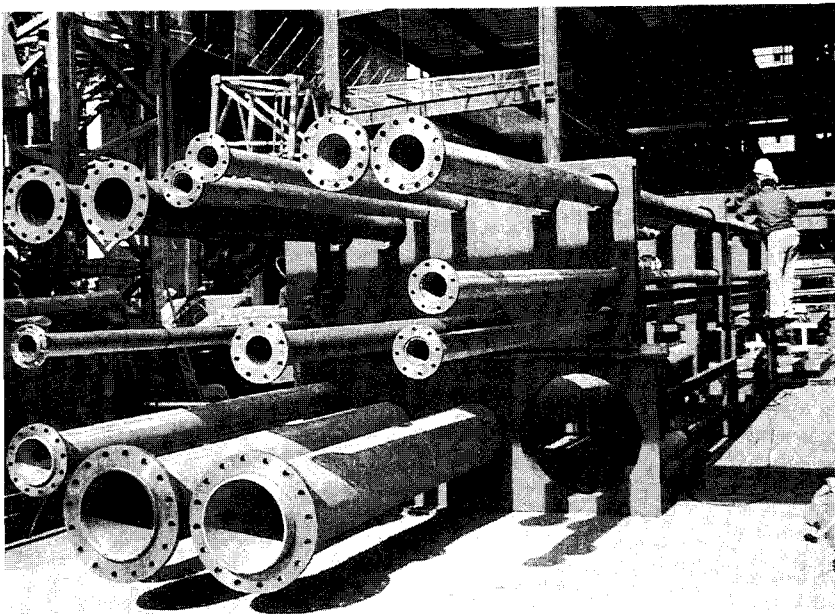


대통령령 제13,916호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령

전문건설업 보호육성 의지 뚜렷



정부가 지난 6월 26일 공포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령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도모와 중소 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적용방법 및 하도급대금지불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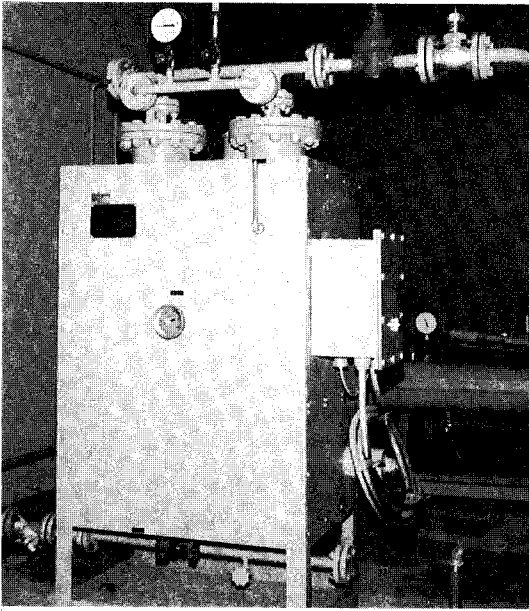
□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의 특징

1] 제18조 제2항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서 6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함.

2] 제22조 제2항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은 1건의 공사계약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교량·터널·댐 공사 등에서의 같이 동일구조물공사를 여러번에 나누어 동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함.



※ 전문시공 소규모 복합공사를 종전 4천만원에서 6천만원 미만까지로 상향조정하고, 도급한도액 적용방법을 개선해서 동일구조물공사 분리발주시 전체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을 적용키로 하면서도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신설 세부 공종별로 적용키로 한 것은 건설부의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 보호육성 의지를 뚜렷이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크게 문제삼아 오던 전문시공 소규모 복합공사와 관련된 제18조 「부대공사의 범위」, ②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발주관서의 재량권 남용 여지까지 없었다.

3] 제33조 2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하도급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4] 제35조 제1항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현행 건설업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발주자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 시행령 역시 임의규정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일반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권리보호와 덤핑입찰방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예정가격 85% 미만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일반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책방향을 확실히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전문업계는 공사대금 장기어음 수령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고 자금난 완화 등의 가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전문건설협회 분석에 의하면 공공공사부문의 하도급 비율은 약 50%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 정도는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에 해당돼 연간 약 1천3백억원 이상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이행상태 확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더이상 일반·특수건설업체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8년과 89년 건설업법령을 개정, 전문건설업자의 보호육성과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가 1건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30% 이상,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같은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바람에 지난 5년간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제도는 있으나 마나 해왔다.

지난 91년 한해에만 무려 2조1천6백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하도급의무화 규정을 위반, 불법시공된 것으로 건설업 통계연보에 나타난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의 하도급의무화 대상공사 수주액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된 공사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5] 제54조 제1항 제3호의 2를 신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하한액의 기재

※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을 기재하는
 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협회의 권한을 강
 화했다.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제4조 (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① 3천만원에 700백만원에
경미공사 범위 개정	일반공사 2천만원 전문공사 5백만원	→ 3천만원 → 7백만원
제18조 (부대공사의 범위)	① 생략 ②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현행과 같음 ② 6천만원 미만 <단서삭제>
복합공사를 전문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4천만원	→ 6천만원
제22조 (도급한도액의 적용)	① 생략 ② 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건설공사를 말한다) 마다 이를 적용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하나의 건축물·교량·터널·댐 등의 공사에 관한 계약을 분할하여 동일인과 체결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③~④ 생략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p> <p>나. 가목외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p> <p>다. 하도급공사의 경우로서 별표 1의 건설공사의 내용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p> <p>③~④ 현행과 같음</p>
분할계약공사의 도급한도액 적용 기준 명시		동일구조물 공사를 분할하여 동일인과 계약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을 명백히 함.
제33조의 2 (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p>① 생략</p> <p>② <신설></p> <p>② 법 제22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p> <p>...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p> <p>.....</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하도급 이행 확인제도 도입		국가·지자체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함.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p>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p>	<p>①</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p> <p>.....</p> <p>.....</p>

구 분	현	행	개	정
		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요건강화				국가·지자체의 발주공사로서 85%미만에 계약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4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 공사협회에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에, 업종별공사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공사협회에 각각 위탁한다.1.~3. (생략) 3의 2 (신설) ②~⑥ 생략		①	①
도급한도액기재업무권한위탁				도급한도액기재업무를 해당 협회에 위탁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통령령 제 13789호 부칙의 개정에 따른 신고 특례)이 영 시행당시 토목건축공사 사업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기준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기한 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도급한도액 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1993년 6월 29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건설업체 진단규칙중 개정령

건설부 장관은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결정과 건설업자의 실질자본금이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는바, 그 전문기관의 선정기준을 현재는 건설부 업무지침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이를 건설부령인 「건설업체 진단규칙」에 직접 정함으로써 경영진단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한 민원 기타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등 건설업체진단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진단규칙중 개정령안 비교표

건설 업체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업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47조 제3항」을 「건설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7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진단의 기준 및 구분)	제1조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따라 회계, 경영, 기술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합된 결과에 의하여 업체의 실태를 평정(評定)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진단」이라 함은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재무구조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 재무관리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진단위탁)	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부문 또는 1부문을 기업의 회계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단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47조 제2항에서「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2.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 18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법시행령
 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기타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그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의 대상인부문과 그 기준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p>합동회계사무소</p> <p>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p> <p>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p> <p>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p> <p>나.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p> <p>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p>
제4조 (적용범위)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건설부 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5조 제4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별지 제1호서식,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에 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 2 (진단결과서 제출)	<신 설>	<p>① 진단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한 요약수정대차대조표 및 요약수정손익계산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수정 대차대조표 및 요약수정손익계산서는 건설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p> <p>③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진단결과서에는 진단을 실시한 공인회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제8조 (세부사항)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과 기타 기준으로서 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건설부 장관이 제시하는 바에 의한다.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제9조 (시공능력의 평정)	진단을 받는 자의 시공능력은 건설업 자본 및 공사실적 금액에 의하여 이를 평정한다.	<삭 제>
별 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삭 제>